‘26. 10.

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경 제 진 흥 과

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6-101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의 특성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방침 결재 여부 : 여
나. 규제심사 대상 여부 : 여
다. 예산수반 여부 : 부
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 : 여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대상 여부 : 여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 여부 : 여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아. 입법예고 기간 : 2026. 7. 20. ~ 8. 10.(21일간)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나. 규제심사 결과 : **비중요규제**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라.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사. 관련 법령 발췌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6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별표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아. 참고자료

- 김제시 필수 자치법규 미마련 현황(규제 분야)
- 전북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정읍시)

자. 방침결정문

김제시 조례 제 호

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하거나 기존 저장설비 용량을 증설하는 경우 또는 용기보관실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 등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제4조 관련)

구분	시설기준 등	허가요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허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사업소의 부지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안전거리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라 다)부터 마)까지의 기준을 준용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허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사업소의 부지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	가.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면적은 19㎡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사무실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한다.
	5) 부대설비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통행과 용기의 하역작업을 위해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한다.

※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허가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중 사업별로 해당하는 [별표]에 따른다.

□ 규제심사 결과 : 비중요규제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수신 경제진흥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결과 회신(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경제진흥과-45492(2026. 9. 2.)호와 관련하여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비중요규제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회신 1부. 끝.

기 획 감 사 실 장

주무관 최보훈 의회법무팀장 이혜라 기획감사실장 2026. 9. 7. 서해영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12313 (2026. 9. 7.) 접수 경제진흥과-46261 (2026. 9. 7.)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기획감사실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6 / dhgns0824@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6. 9. 4.

자치법규명	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개정()
소관부서	경제진흥과	담당자 (행정전화)	황병영 3453	기타	경제진흥과-45492 (2026. 9. 2.)
제·개정 및 폐지 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의 특성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검 토 의 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제정안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 등 허가요건을 제한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규정한 범위 이내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함으로,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비중요규제에 해당함**				

규제심사 결 과	신설(○)	강화()	완화()	폐지()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 : 서해영(3206) / 의회법무팀장: 이혜라(3213) / 담당자: 최보훈(3723)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전북권 4대 도시로 융비하는 김제

김 제 시

수신 경제진흥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전북김제029)-「김제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 경제진흥과-40675(2026.8.5.)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2026A전북김제029) 1부. 끝.

김 제 시 장

주무관	김지은	여성가족팀장	최남	교육청소년팀장	대결 2026. 8. 6. 황주애	교육기획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교육기획과-26867 (2026. 8. 6.) 접수 경제진흥과-40844 (2026. 8. 6.)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6905 팩스번호 063-540-6929 / kjskje44@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table>
<tr><td>관리번호</td><td colspan="4">2026A전북김제029</td></tr>
<tr><td>정 책 명</td><td colspan="4">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td></tr>
<tr><td rowspan="3">소관부서</td><td>기관명</td><td colspan="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td></tr>
<tr><td>부서명</td><td colspan="3">경제진흥과</td></tr>
<tr><td>담당자명</td><td>황병영</td><td>전화번호</td><td>063-540-3453</td></tr>
<tr><td>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td><td colspan="4">2026년 8월 5일</td></tr>
<tr><td>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제진흥과)</td><td colspan="4">Ⅰ. 개 요
□ 개정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Ⅱ.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5. 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7. 성별 통계 관련 조항 : 해당없음
8. 성별 통계 개선안 : 해당없음</td></tr>
<tr><td rowspan="2">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td><td colspan="4">■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td></tr>
<tr><td colspan="4">’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td></tr>
<tr><td>검토의견
반영계획서</td><td colspan="4">해당 없음</td></tr>
</table>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8월 05일

김제시 복지환경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은/063-540-6905)

경제진흥과장 귀하

□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부서의견 조회 결과보고

경제진흥과-3928(2026. 7.29.)호와 관련하여 「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부서의견 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회기간: 2026. 7. 29.~ 8. 4. (7일간)
2. 조회방법: 공문발송
3. 조회내용: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의견 수렴
4. 조회결과: 의견없음. 끝.

주무관 황명영 에너지팀장 김갑수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전결 2026. 8. 11.
협조자
시행 경제진흥과-41520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453 팩스번호 063-540-3448 / news1009@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결과보고

경제진흥과-36761(2026.7.16.)호와 관련하여 「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례명 : 「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7. 20. ~ 8. 11.(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금후계획 : 제출의견이 없으므로 이후 행정절차 이행. 끝.

주무관 황병영 에너지팀장 김갑수 경제진흥과장 박정완 전결 2026. 8. 21.
협조자
시행 경제진흥과-43364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453 팩스번호 063-540-3448 / news1009@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알림

기획감사실-12714(2026. 9. 14.)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자 : 2026. 9. 16.(수)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참석위원 : 8명
4. 심의안건 : 9건(조례 6, 규칙3)
5. 의결결과 : **원안가결 9건**

연번	심의번호	소관부서	안건명	의결결과
계			총 9건 (조례 6, 규칙3)	
1	2026-43	김진수 의원(의회사무국)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26-44	김영자 의원(의회사무국)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026-45	행정지원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4	2026-46	행정지원과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5	2026-47	행정지원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6	2026-48	세정과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026-49	회계과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2026-50	경제진흥과	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9	2026-51	건설과	김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붙임 2026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각 1부. 끝.

김 제 시 장

수신자 김제시의회의장, 행정지원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경제진흥과장, 건설과장

주무관 [redacted] 의회법무팀장 [redacted] 기획감사실장 [redacted] 2026. 9. 18.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13105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기획감사실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6 / qhgns0824@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관련 법령 발췌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2025. 10. 1.>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2025. 10. 1.>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2. 3.,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2025. 10. 1.>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2. 3.>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2025. 10. 1.>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2025. 10. 1.>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

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8. 20., 2025. 10. 1.>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2025. 10.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5조제5항, 법 제8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18., 2022. 5. 27.>

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

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의2

2.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

4.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5.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②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1. 28.>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24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 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 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 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 m
200톤 초과	39 m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W = 0.85dV

 W: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kg)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kg/L)

 V: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2.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아)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가스라이터용 충전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라)에서 같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2) 충전설비 중 충전기는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충전기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을 유지할 것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2)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m 이상을 유지할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11. 28.>

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

2) 저장설비기준

다)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이상으로 할 것

5) 부대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할 것

나)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국토계획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6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참고자료 : 김제시 필수 자치법규 미마련 현황(규제 분야)

2026년 김제시 규제혁신 추진계획

2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1 자치법규 규제 발굴 및 정비 합동평가지표 연계

○ **(추진목표)** 상위법령 규제가 폐지·신설·강화·완화되었으나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주민 불편, 기업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불편·부담 해소 및 규제합리화

○ **(정비시기)** 2026. 6월 ~ 10월

○ **(정비대상)** 최근 5년간 상위법령의 제·개정 취지(규제완화·합리화)가 미반영된 자치법규, 규제 관련 필수 자치법규 미마련 2건

소관부처	법령명	해당조문	공포일	시행일	소관부서
산업통상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허가의 기준)	17. 10. 31.	17. 10. 31.	경제진흥과
국토교통부	도로법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17. 11. 28.	18. 5. 29.	건설과

□ 참고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

시군명	조 례 명	제정일자
전북자치도	-	
전주시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2015. 4. 15.
군산시	-	
익산시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2025. 8. 13.
정읍시	정읍시 액화석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2021. 5. 24.
남원시	남원시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2020. 10. 19.
김제시	-	
완주군	완주군 액화석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2023. 3. 16.
진안군	진안군 액화석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2025. 12. 5.
무주군	무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2022. 12. 15.
장수군	장수군 액화석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2025. 12. 15.
임실군	-	
순창군	순창군 액화석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2025. 12. 24.
고창군	-	
부안군	부안군 액화석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2018. 8. 14.

□ 참고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정읍시)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24.]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조례 제1813호, 2021. 5.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1.5.2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이전 및 기존 저장설비가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삭제 2016.12.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고시」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고시 2007-34호)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2016. 12. 23.> 부 칙 <2016.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24.> 부 칙 <2021.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6.12.23>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자격기준	1. 대표자 또는 종사자는 법이 정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대표자는 허가신청 이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25만원 이상이며**, 6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이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기준	1.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별표 4】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의 2배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부지는 진출입로 도로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사업소 부지, 건축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
판매사업·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자격기준	1. 대표자 또는 종사자는 법이 정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대표자는 허가신청 이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5만원 이상이며,** 5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이어야 한다, 다반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기준	1. 사업소 부지는 용기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사업소에는 가스사업 용도 외의 건축물이나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 4.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사무실 면적 : 9㎡ 이상 나. 용기보관실 면적 : 19㎡ 이상 다. 주차장 : (16.5㎡ x 운반차량 보유대수) 이상

※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허가기준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중 사업별로 해당하는 [별표]에 따른다.

□ 방침결정문

등록번호	경제진흥과 -3606
등록일자	
결재일자	2016. 9. 16.
공개구분	

주무관	팀 장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결재
박희원	김승주			이해서		
협 조	의회법무팀장 이혜라 기획감사실장					

시행합니다. 사인요청 비상하는 김제

「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안)

김 제 시

경 제 진 흥 과